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2032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11. 9.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E생) 사이에 2021. 2.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1. 2. 17. 접수 제108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4. 2. 26.경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2021. 2. 17.부터 카드론, 현금서비스대금 등 18,952,443원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1차전1424호로 D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30. 'D는 원고에게 19,616,319원과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는 2021.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2%, 6,466,699원에 대하여는 2021.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9%, 1,122,610원에 대하여는 2021.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9%, 35,100원에 대하여는 2021.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5%, 5,325,234원에 대하여는 2021.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그 지급명령은 2021. 6. 4. 확정되었다.

나. D는 2021. 2. 16. 피고와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1. 2. 17. 접수 제10883호로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F단체에 대한 채무,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G에 대한 채무와 피고에 대한 9,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광주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H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와 D 사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다음날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거나 물상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대물변제나 물상담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특정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D는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5. 10. 15.경 D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당시 D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윤

별지